#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7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1.

발 의 자:성일종·하태경·권은희

태영호 • 박 진 • 권영세

조수진 · 김태흠 · 양금희

신원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제1차 연평해전, 제2차 연평해전, 천안함 폭침,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북한군의 기습적인 피격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서해바다를 지키며 군인의 임무를 완수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만큼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,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·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제1차 연평해전, 제2차 연평해전, 천안함 폭침,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는 법인으로 함(안 제3조).
- 다. 제1차 연평해전, 제2차 연평해전, 천안함 폭침,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사망하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의 유족은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(안 제4조).
- 라.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는 서해수호 관련 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·전시 및 조사·연구, 홍보·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, 관련 학예활동, 서해수호 관련 역사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함 (안 제7조).
- 마.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 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(안 제8조).
- 바.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(안 제14조).
- 사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

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(안 제15조).

아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(안 제16조).

###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제1차 연평해전, 제2차 연평해전, 천안함 폭침,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제1차 연평해전"이란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 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.
- 2. "제2차 연평해전"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 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.
- 3. "천안함 폭침"이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을 말한다.
- 4. "연평도 포격사건"이란 2011년 11월 23일 서해 연평도를 향해 북한이 포격을 한 사건을 말한다.
- 제3조(법인격) 서해수호단체기념사업회(이하 "기념사업회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
- 제4조(회원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회원이 될수 있다.
  - 1. 제1차 연평해전, 제2차 연평해전, 천안함 폭침,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
  - 2. 제1차 연평해전, 제2차 연평해전, 천안함 폭침,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사망하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의 유족
- 제5조(기념사업회의 설립) ① 기념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목적
  - 2. 명칭
  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 - 4. 임원의 성명과 주소
  - 5. 공고의 방법
- 제6조(정관)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 - 1. 목적
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4.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
- 5. 조직에 관한 사항
- 6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7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8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10. 공고에 관한 사항
-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7조(사업)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1. 서해수호 관련 자료의 수집・보존・관리・전시 및 조사・연구
  - 2. 서해수호 관련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·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
  - 3. 서해수호 관련 학예활동
  - 4. 서해수호 관련 역사 연구
  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- 제8조(임원)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  - ②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이 임면(任免)하고,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

- 임하며,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.
- ③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.
-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(非常勤)으로 한다.
- 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10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 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 -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.
  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고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- ④ 감사(監事)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(監査)한다.
- 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  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3.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
- 제12조(이사회)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

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.

-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13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- 1.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-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- 3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- 4. 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 - 5.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- 6.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제14조(사무처)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.
  -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- 제15조(보조금 및 출연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

- 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②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있다.
- 제1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 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기념 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(無償)으로 대부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조건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
- 제17조(회계연도)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8조(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)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19조(결산보고)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자료의 열람·복사 등의 요청 등) ① 기념사업회는 국가, 지방 자치단체, 교육기관, 연구단체,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

- 람·복사·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기념사업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·복사·대여 또는 위탁 전시 등을 요청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.
- 제21조(지도·감독) 국가보훈처장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- 제22조(준용)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설립준비)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 에 8명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.
  - ② 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회의 설립 등기를 한 후 회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-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재단법인 천안함재단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천안함재단(이하 "구법인"이라 한다)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기념사업회가 승계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신청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동시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,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・의무는 기념사업회가 승계한다.
  - ③ 구법인의 임원은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.
  - ④ 구법인의 직원은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동시에 기념사업회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  - ⑤ 제2항에 따라 기념사업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기념사업회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.